

물환경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강정혜*

<차 례>

- I. 서론
- II. 현행법 하에서의 수도사업
- III. 물환경(수도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 IV. 결론

I. 서론

1. 논의의 범위

본고에서는 물환경 선진화를 위한 법적과제를 논함에 있어 상수도산업과 하수도산업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하수도산업보다 상수도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로 상수도산업(이하 수도산업이라고도 함)에 대한 법적 과제를 논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하수도산업에 대하여는 대체로 진입장벽이 수도산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어 현재의 상황으로도 이미 베올리아(Veolia), 온테오(Ondeo) 등 다국적 기업이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내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있는 형편이다. 또한 수도산업의 구조개편에 있어 어떠한 법적 형식을 선택할 것인지(공사화, 민영화 등)는 정책판단과 경영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점에 대한 법적 접근은 제한적으로만 기능할 것이다.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 물산업 관련 세계적 동향

2000.5.자 포춘(Fortune)지에 따르면, 전세계 물시장은 500조원에 이르며 21세기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수천조원 규모의 물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시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차관 제공시 투자금회수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상수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3. “물환경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논의의 필요성

(1) 다국적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이미 국내 하수도시장에서는 전세계 관련사업 매출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인 베올리아(Veolia), 온데오(Ondeo) 등이 진출한 실정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간 세계를 상대로 영위해온 사업경험이나 기술축적, 그 정보력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시급히 관련사업을 육성하여 외국기업들이 물산업과 관련한 국내시장을 선점, 독점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베올리아 : 2001년 현대 대산공단, 하이닉스반도체 공업용수도 인수하였으며 한국진출3년만에 매출 2천억원을 돌파하였음.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자하여 마산시 및 김천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중

베올리아, 삼성 : 2001년.12. 인천 송도하수처리장 민자사업 협약체결

온데오 : 서울 부산 등 일부 광역시 정수시설 설계 참여

온데오, 현대 : 부산 중앙하수처리장 턴키사업 사업자 선정

온데오, 한화 : 2001년 12. 양주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협약체결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하수도서비스 표준화¹⁾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상하수도서비스

1) 환경부 보도자료, ISO/TC224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 본격시동, 2004.6.

표준(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and sewerage)”을 2006년도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상하수도서비스표준”은 그동안 프랑스(민간위탁방식), 영국(민영화), 독일(공사화) 등 물산업 선진국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ISO에 의해 먹는 물공급과 폐수관리방법에 의한 국제표준화됨으로서 전세계가 동일한 물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물환경에 대한 선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된 셈이다.

위 ISO표준은 강제규정은 아니나, 현재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이 위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선진국은 위 ISO표준을 시장 확대 수단(선진국은 표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면서 개도국 시장에는 표준을 앞세워 교역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 표준이 도입될 경우 연간 5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물 산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소결론

국내 물산업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물환경 선진화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표준이 도입될 경우 연간 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의 물산업 시장은 전문기술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선진국의 개방압력을 받게 되어 위 표준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 환경부는 기술표준원,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대응팀을 구성하여 올 9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ISO 총회 등 향후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며, 물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우리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 9월 수처리선진사업단을 발족시켜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II. 현행법 하에서의 수도사업

1. 수도사업자(원칙과 관련된 규정)

수도법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1항은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칙적인 수도공급사업자가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1항 2호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사업을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는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적인 수도사업자(위 밀줄 부분 참조)

위 수도법 제17조 3항이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한 민간사업자인 바, 이 범위에 대하여는 수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조의 2[수도시설위탁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항과 관련하여서는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분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으로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외(外)에도 민간사업자가 위탁된 수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현행 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용 민간사업자가 수탁자로서 수도사업을 경영,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얼마나 빈번히 경쟁력이라는 관점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수탁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Ⅲ. 물환경(수도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진입장벽과 관련된 현행 법체제의 문제점

(1) 수도사업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도사업자와 관련하여, 현행법 체제는 예외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외(外)에도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수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위탁은 원칙적인 경영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것 뿐이므로, 수도사업자 부문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수도사업의 경쟁체제나 책임경영이 촉진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차 수도사업을 공사화하든지 민영화하든지,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쟁체제로 구조개편을 할 경우, 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현행 법체제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2) 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1항 2호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사업을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는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진입장벽의 대표적 예이므로 이 또한 경쟁 촉진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구조개편의 방식

위와 같은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중심의 수도사업체제를 경쟁과 효율을 촉진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정부가 검토하였던 안은 민영화안과 공사화안이다.

민영화안은 환경부안으로서, 상하수도를 통합하고, 유역단위로 광역적 민영화하며, 민영화의 형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회사가 소유, 운영권을

갖는 완전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지방정부의 비호응으로 추진이 유보된 상태이다. 공사화 안은 행정자치부안으로서, 7대 특·광역시는 독립공사화, 기타 시·군은 23개 정도의 권역별 공사화, 인구 50만명이상 시·군은 인근지역 통합공사화, 중소 시·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병행 추진하고 일거에 전국 상수도를 공사화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공사화를 추진하는 안이다. 어떤 구조개편방식을 선택하든지간에, 수도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부문이 수도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 참여형태의 법적 형식은 다음과 같다.

3. 민간(경쟁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포함될 수 있다)부분 참여형태의 법적 형식

민간이 자본에 참여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① 기술, 운영부문 참여, ② 직접 자본참여, ③ 공공부문(사업자)과 민간부문이 합작하는 형식으로 일응 구분할 수 있다.²⁾ 아래의 유형은 대표적인 유형에 불과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양한 형식의 참여형태를 도출해낼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³⁾에도 다양한 형식의 수도공급서비스 계약이 존재한다.

(1) **보조운영계약·기술지원계약** : 민간기업의 선진화된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는 계약형태이나, 소극적인 민간참여형태로서 의사결정, 자금투자 등 핵심부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2) **운영계약·유지관리계약** : 기술지원계약보다는 보다 많은 범위에 참여하나 같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사업자는 여전히 건설과 보수, 공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문현주,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연구(II)』,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12. 144면

3)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연구(요약)』, 2004.3., 82면

외부위탁 : 특정기능, 업무의 외부위탁

경영계약 : 경영만 외부에 위탁, 소유권은 정부

리스계약 : 정부소유의 시설(수도시설)을 외부기관이 리스운영

허가권 : 특정기능을 허가하여 공급, 엄격한 규제, 허가된 기관만이 공급가능

BOT(Building-Operating-Transfer) : 외부기관이 투자, 사용, 수익 후 공공부분에 이전

BOO(Building-Own-Operating) : 외부투자, 소유까지 가능, 시설부분의 민영화

면허제 : 면허권을 가진 자에게 공급허용, 라이선스 제도

(3) **위탁관리계약** : 모든 설비운전 및 운영,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운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도 조달한다. 사업자는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민간에게 투자에 대한 권한이 없어 투자와 운영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민간 부문과 사업자간에 효과적인 투자여부와 운영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자본투자에 의한 운영계약** : 민간부문이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설비비, 운전, 보수에 대한 모든 자본 및 운전자본을 조달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에 따른 보너스 혹은 이익증대에 따른 이익분배가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설비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양도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가 가지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자금, 시설투자, 운영 등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나 민간(운영주체)이 직접 요금징수할 경우(이경우에도 요금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통제된다) 수도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만을 줄 수 있다.

(5) **합작계약** : 민간부문과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등)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지분을 소유하며, 합작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징수한다. 소유 주식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이 분배된다.

(6) **민간회사** : 전적으로 민간회사가 시설, 자산등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공적 규제 외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7) **우리나라의 현실 -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SOC사업**

1) 민간자본유치 근거 규정

수도법 제17조의2[수도사업의 민간자본유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2001.3.28. 신설)하고 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 수도시설 등을 동법이 규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자본등을 통하여 수도사업자진입장벽을 완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자 진입장벽을 갖춘 현행 법체제 아래에서는, 민간자본이 수탁자로서 경영, 운영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주체적인 수도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법적 형태

한편 이 경우 수도사업자에 신규진입하는 민간사업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법적 형태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법규정이 있는 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그 법규정이다.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는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동 법률이 정의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률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기타 소정의 요건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위 세가지 방식 외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5)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계약구조가 당사자간의 협약에 기하여 도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민간 부문)가 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영구히 소유, 관리,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고 위 간접자본시설의 소유권이나 관리운영권은 법령과 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3) 구체적 사례

① A 외국계 합작회사

지방자치단체B와 A사는 2001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협약의 내용 중 중요한 법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바, 이는 전형적이고도 중요한 계약요소이므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사는 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00년 동안 무상사용하며 위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있다. B는 A사에게 위 무상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한다. 또한 위 협약으로서 사업시행자인 A사가 협약서상의 운영성능기준(수질의 판단요소, 수질검사의 절차, 방법 및 빈도 등을 자세히 규정)과 법정수질을 보증할 의무를 지고, 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증수질기준(위 운영성능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을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수질을 통제한다.”

② C사

D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서 D가 C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C사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대기업 등이 주주로서 출자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이 경우에도 무상사용기간설정, 사용료지급 및 지급보장, 보증수질 등이 기본협약의 주요 구조이다.

4. “ISO 상하수도서비스 표준”에 따른 법적 정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하수도서비스 표준이 채택될 경우,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강화되어 국내외의 상하수도 사업자간에 경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시장 개방이 촉진되어 전세계 물산업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준(안)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요건 등을 관련 법령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물산업계가 위 표준에 가까이 도달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경쟁력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물시장이 연간 약 8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능력,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부족에 따른 책임경영미흡, 기술력 부족 등으로 시장개방에 매우 취약하다.

한편 위 표준(안) 중 몇 가지 세부지표를 적시하면, 소비자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돗물 수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방법의 표준화”, 경영회계와 관련하여 “상수도 사업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경영체계의 표준화”, “수도요금 산출 및 적정요금책정에 대한 표준화”, “상수도공급시설 운영 원가산정의 표준화”, 운영에 대한 지표로서 “관로누수검침 및 누수방지를 위한 관로 관리의 표준화”, “수질모니터링의 표준화” 등을 들 수 있는 바, 우리나라 물산업이 위 표준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법제를 정비하여 위 표준에 도달하게끔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위 ISO의 상하수도서비스표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내 물산업 시장의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것이다.

5. 가격결정 관련

지방상수도 요금의 경우,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는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합당하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도사업에 다양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수도사업의 소유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계약형태가 출현하고, 수도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위탁경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의 가격결정구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또한 완전한 시장결정구조에 맡겨지는 것도 수도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중간적인 형태로서 각 이해 당사자(유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수탁자, 주민대표, 지방의회의원 등)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예 : 위원회)에서 수도요금을 정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수도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 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미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등 위탁자가 자의적으로 위탁권을 행사하여 물산업의 경쟁력을 해치더라도 통제할 수 없다. 이점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보고서⁴⁾는 반드시 위탁경영의 경쟁입찰제를 의무화시키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수도사업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규정하고, 상수도 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담은 법규정의 신설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IV. 결 론

이상에서 한국의 수도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하에서의 수도사업자의 범위 문제 및 민간부분의 법적 참여 형식을 살펴 보았는 바, 다국적기업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상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민간부분이 수도사업에 자유로이 진출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경험을 축적해온 한국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민간부분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간 공공부분이 독점하고 있었던 수도산업에 있어 그 진출의 법적 형식은 시장상황이나 국민정서(수도산업의 공공성)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위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물환경, 물산업, 상수도, 하수도, 물산업개방, 하수도산업, 상하수도서비스표준화

4)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연구(요약)』, 2004.3., 87면

【참 고 문 헌】

- 환경부보도자료, ISO/TC224 상하수도서비스 표준화 본격시동, 2004.6
- 문현주,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연구(II),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12
-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수도산업의 구조개편 실천방안연구(요약), 2004.3
- 환경부, 환경백서, 2003
-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연구, 2001.12
-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구조개편방안연구, 2003.2
- 김채홍,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2002
- 박수혁, 물관련법제의 검토, 토지법학 제16권, 2000
- 환경부,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 2001.10.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02

【Abstract】

Legal Issues and Solutions for improvement of Water Industry

Kang, Chung Hae

Currently, most of Korea's water industry is operated, maintain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various bureaucratic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Although there are private businesses participating in the industry, the strict government regulations and barriers have much discourage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parties. This in turn has left the Korea's water industry lacking the essential managerial, technological skills and advancements compare to other well-developed countries.

By the year 2006,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will attempt to implement the "Service Activities Relation to Drink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standard ("standard") to all of its member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is not mandatory for all nations. However, since 80% of the world's trade volume is affected by the standard (i.e., many well-developed countries use the standard as a tool to overcome certain trade barriers in their fav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will greatly affect the world's water industry.

As such, in order for Korea's water supply industry to maintain a competitive presence in the domestic market and not be dominated by foreign corporations, who already have extensive experience from other countr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take active steps to rid the barriers for privatization and allow private businesses to freely enter the water market as they wish. The laws and regulations overseeing the water industry, which has been solely controlled by the public sector, needs to be amended according to current market condition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his will indeed allow the industry to be well equipped with the necessary managerial, technological skills and advancements to take on the competition from foreign companies who already have established a presence in Korea's water supply industry.